

양 천 구

시 정 요 구

제 목 위험근무수당 수령 부적정(직무 위험성 미충족)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◆◆◆◆◆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◆◆과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[별표 7]의 지급 구분 및 [별표 8]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295호, 2024.8.29.)
V. 특수근무수당 1. 위험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) 직무의 위험성, 2) 상시 종사 여부, 3)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“직무의 위험성”은 영 [별표 8]의 각 부문과 등급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고, “상시 종사”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 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·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, “직접 종사”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과 ○○○ 외 33명은 '사무업무, ***** 및 ***** 관리 점검, *****개선사업, ***** 관리, 어린이 ***** 안전관리, *****법 관련 인허가·민원관리, ***** 보호 등'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면서 2024. 1월부터 2024. 10월, 10개월 동안 아래 [표 1]과 같이 위험근무수당 총 9,758,19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.

[표 1] 위험근무수당 지급 및 부적정 내역 : 개별 통보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과는 위험근무수당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*** 발령 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 위험근무수당 수령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변함 없다.

5. 조치할 사항

◆◆과장은

과다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9,758,190원을 환수하고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

※ 감사 대상기간 이후 지급된 수당은 자체 반납처리